

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
【2021. 4.20.(화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·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20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35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8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과의 조문 불일치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2조의2)
 - 존속기한 변경(2021.6.30. → 2026.6.30.)
- 나.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(안 제7조제1항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54조 →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8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,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1. 01. 27. ~ 02. 16.) 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 : 해당없음
- 5)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(기획예산과) : 원안가결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-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 법령 근거조항 변경에 맞춰 현행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함(안 제2조의2)
 - 기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던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
- 상위법령 근거조항 등 정비(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)
 -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상위법 근거조항 「지방재정법」 제54조(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)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함(안 제7조제1항)

-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2020.12.10. 시행)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8조)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2조의2, 제3조제3항, 제4조, 제5조제1항, 제6조제5항 및 제6항, 제6조의2제3항, 제6조의3, 제7조)

다. 종합 의견

- 도로굴착복구기금은 「도로법」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, 도로굴착 공사 구간의 복구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신속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,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¹⁾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,
- 이와 함께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비와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1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: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
 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「도로법」 제91조²⁾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정하고 있고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제3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
 - 도로굴착이 필요한 공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게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도로 복구에 필요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고, 그 수입으로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,
 -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가로등 개량공사 시 굴착구간 확대 및 지하 매설물 관리기관 굴착 수요에 따라 발생하므로 변화요인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워 예산 편성방식에 따른 운영보다는 원인발생에 따른 계정관리의 특이성이 있음

- 2) 「도로법」 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참고2

2020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결산 내역

□ 2020 기금조성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19 연도말 조성액(A)	수입(B)	지출(C)	증감(D)=B-C	2020 연도말 조성액
1,482,856	1,869,863	1,822,726	47,137	1,529,993

○ 수 입 : 3,352,718천원 (2020. 12. 31. 기준)

- 예치금회수 : 1,482,856천원(2019년 이월액)
-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: 1,843,593천원
- 이자수입 : 26,269천원

○ 지 출 : 3,352,718천원 (2020. 12. 31. 기준)

- 도로굴착복구공사 사업비 : 1,820,326천원
- 2020년 상·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책자 제작 구매
 - 책자80부 : 2,018천원
-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위촉장 제작 구매
 - 위촉장 4매 : 28천원
- 물품구입비(위킹미터외 2건) : 353천원
- 예치금회수 : 1,529,993천원(2020년 이월액)

□ 연도별 기금 운용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	조성액				집행액				잔액
	계	전입금	이자수입	기타수입	계	비융자성사업비	융자성사업비	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	
2015년까지	25,616		1,179	24,437	24,499	24,463		36	1,117
2016년도	1,562		17	1,545	1,318	1,318			244
2017년도	1,135		24	1,111	1,490	1,490			△355
2018년도	1,342		20	1,322	1,284	1,284			58
2019년도	1,836		34	1,802	1,418	1,418			418
2020년도	1,831		26	1,805	1,835	1,835			△4
2021년도	1,563		23	1,540	1,505	1,505			58
계	34,889		1,325	33,564	33,353	33,317		36	1,536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